

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[별표 7] <개정 2022. 1. 4.>

**특수지근무수당(도서벽지수당) 지급 구분표** (제12조제1항 관련)

(월 지급액, 달러는 미합중국 화폐 단위임)

적용대상		급지별			
		가지역	나지역	다지역	라지역
1. 국가공무원(재외공무원·군인·군무원, 북한 지역 근무공무원 제외)		60,000원	50,000원	40,000원	30,000원
		비고 1. 백령도·대청도·소청도·연평도 및 소연평도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의 경우 30,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. 2. 시·도소방공무원 중 「서해 5도 지원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서해 5도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 제12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한다.			
2. 재외공무원	1·2·3급, 고위공무원단 가·나등급 직위에 임용된 일반직 공무원 및 외무공무원, 14등급부터 9등급까지의 외무공무원, 소장·준장·대령·중령, 국가정보원 전문관(2·3급 상당 직위)	2,500달러	1,500달러	800달러	
	4·5·6·7급, 8등급부터 3등급까지의 외무공무원, 소령·대위, 국가정보원 전문관(4·5급 상당 직위)	2,300달러	1,400달러	720달러	
비고: 전쟁 또는 내전 등으로 근무 여건이 고도로 열악한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되는 국가의 경우 외교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한 기간 동안 가지역 지급액의 50 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.					
3. 군인·군무원·의무경찰	중령 이하의 장교, 준위, 원사·상사·중사·하사, 3급부터 9급까지의 군무원, 전문군무경력관 가군·나군·다군	갑지역·을지역: 60,000원 (가산금: 서해 5개도서 60,000원, 비무장지대 및 북방한계선 인접해역 4개 도서 30,000원, 비무장지대와 접한 초소 및 해안초소 근무자 20,000원)			
	지원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와 병, 의무경찰	갑지역: 25,000원 을지역: 20,000원 (가산금: 서해 5개도서 40,000원, 비무장지대 및 북방한계선 인접해역 4개 도서 20,000원, 비무장지대와 접한 초소 및 해안초소 근무자 10,000원)			
	비고 1. 갑지역 대상자는 비무장지대, 울릉도·독도 및 그 해상에서 근무하는 사람과 서해 5개 도서(백령도·대청도·소청도·연평도 및 우도를 말한다) 및 적과 접촉하는 해역에서 해상작전을 위하여 상주 근무하는 사람으로 하고, 을지역 대상자는 비무장지대와 접한 초소 또는 대간첩작전 및 해상경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안초소에서 상주 근무하는 사람, 해발 800미터 이상 고지대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한다. 2. 가산금은 갑지역 대상자 중 비무장지대와 서해 5개 도서 및 북방한계선 인접해역 4개 도서(불음도, 주문도, 서검도, 말도를 말한다)에서 근무하는 사람과, 을지역 대상자 중 비무장지대와 접한 초소 또는 대간첩작전 및 해상경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안초소에 상주근무하는 사람에게 각각 지급한다.				
4. 북한지역 근무공무원		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통일부장관이 정하되, 지			

	급액은 위 제2호란의 재외공무원의 특수지근무 수당 지급액의 범위에서 정한다.
--	---